

---

# 한국문화정보원 정관

---

2014. 12

The logo for KCISA (Korea Cultural Information Service Agency) features the letters 'KCISA' in a bold, dark blue, sans-serif font. A red circular graphic element is positioned above the letter 'I', resembling a stylized flame or a drop.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www.kcisa.kr](http://www.kcisa.kr)

# 한국문화정보원 정관

<제정 2002. 12. 13>  
<개정 2003. 2. 17>  
<개정 2004. 12. 30>  
<개정 2006. 4. 21>  
<개정 2009. 1. 5>  
<개정 2009. 1. 30>  
<개정 2010. 2. 22>  
<개정 2011. 2. 24>  
<개정 2012. 2. 23>  
<개정 2013. 7. 05>  
<개정 2014. 12. 10>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으로 국문으로는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Culture Information Service Agency(KCISA)”라 한다.(개정 2014. 12. 10)

**제2조(목적)** 정보원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촉진과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문화정보의 지식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지식정보사회의 기반 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정보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와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정보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정보화 추진체계 지원
2. 문화정보화 및 문화지식관리시스템 기획 및 중장기 방향 연구의 지원
3. 문화정보화 및 문화지식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의 지원
4.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 사업 발굴·추진 및 지원

5. 문화정보화에 대한 지표의 조사·개발 및 통계자료의 관리 지원 및 문화정보화 관련 정보의 출판·보급 지원
6. 문화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지원
7. 문화정보시스템 및 지식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8. 문화정보화사업 평가지침 개발, 평가 및 지원
9. 문화정보시스템 연계·통합 및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 개발 지원
10. 문화정보화 기술개발 연구
11.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 및 법령·제도 개선방향 연구
12. 기타 정보원의 설립 목적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13. 문화관련 동영상콘텐츠(UCC) 생산 및 관리, 문화PD 양성 및 문화네트워크 관리 (신설 2009. 1. 5)
14.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의 조사·분석, 통합관리·보급 등 및 통계정보시스템의 통합적 서비스 및 운영 등 지원(신설 2011. 2. 24)
15. 문화정보화 관련 교육 등 인력양성 및 교육시설 운영 등을 통한 연수사업(신설 2011. 2. 24)
16.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 및 관련 사업(신설 2013. 7. 05)

**제5조(수익사업)** 정보원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정보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 2. 23)

②정보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2 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정보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이사 5인이상 15인 이내(원장 1인 포함)
3. 감사 1인

②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이사)** ①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다만, 원장의 임면은 제10조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3. 2. 17)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계담당관
2. 삭제 (2006. 4. 21)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개정 2009. 1. 30)

③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이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계, 과학기술계, 정보통신계 및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관련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9조(이사의 직무)**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정보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②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순으로 이사회에 관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 5)

③상임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제10조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대표권 행사의 경우에는 직무의 겸임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 1. 5)

④삭제

**제10조(원장)** ①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

②원장은 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3. 2. 17)

④원장이 유고시에는 당연직 이사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계담당관이 원장의 복귀 또는 임명 시까지 정보원을 대표할 수 있다.(개정 2009. 1. 5)

⑤제4항의 대표권은 이사회로 제한되며 정보원의 원장 직무는 직제규정 제9조에 의해 지명된 직원이 대행한다.(신설 2009. 1. 5)

**제11조(감사)** ①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보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감사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요구
3. 이사회에 출석, 발언
4. 정보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발견시 이사회에 지체없이 보고
5. 회계감사결과의 결산이사회에의 보고
6. 제4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이사회의 소집요구

7.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8. 이사회 의사록의 확인

③감사는 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선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결원시에는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의 사유외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이사회의 선임이 있는 날부터 기산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원장 및 감사에 대하여는 임명 및 선임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개정 2012. 2. 23)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미성년자

②임원이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①임원 선임에 있어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적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 해임)** ①정보원의 임원(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규정, 기타 적법한 이사의 결의를 위반한 경우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정보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임원의 선임 또는 그 임명이 취소된 경우

6. 기타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정보원의 업무를 방해 또는 정보원의 위신을 저해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해 원장을 제외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원장이 해임한다. (개정 2003. 2. 17)

**제16조(임원의 대우)** ①임원의 보수는 정보원의 보수규정에 따르되 보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원장을 제외한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 구성등)** ①정보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서 구성하고 정보원의 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는 위임장에 의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원장이 유고시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 최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차입, 기본재산의 취득, 변경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이익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제1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한 사항
8. 정보원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9. 법령 및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영리·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부대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타 원장이 정보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권 제한)**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정보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0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3. 2. 17)

1. 정보원 운영의 중요 사항과 관련하여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4. 제1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안건, 개최 일시,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판단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기 곤란하거나, 의결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1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개최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등)**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이사회 의결사항 중 서면으로 의결한 사항은 차기 정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사록)** ①의장은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정보원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이사회 회의경과 및 결과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을 포함한 출석이사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고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규정)**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제 4 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재산)** ①정보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정보원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3. 2. 17)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2.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개정 2012. 2. 23)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삭제 (2003. 2. 17)
6.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적립금

③기본재산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6조(기본재산의 처분제한)** 정보원의 재산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각·양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운영재원)** 정보원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적립금의 과실, 용역수탁 수입, 찬조금, 기부금, 차입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차입금등)** 정보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 정보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회계원칙)** 정보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2. 23)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정보원은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손익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17)

②정보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한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



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실적과 결산)** 정보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17, 개정 2012. 2. 23)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4. 감사 의견서
5. 기본재산목록과 평가액
6.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4조(잉여금 처리)** ①정보원은 결산결과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할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의 처리는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정보원의 재산은 정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정보원의 임원
2. 정보원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정보원과 재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정보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 5 장 직원 및 조직

제36조(조직) 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직원) ①삭제 (2003. 2. 17)

②삭제 (2003. 2. 17)

③삭제 (2003. 2. 17)

④정보원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3. 2. 17)

제38조(대리인 임명) 삭제 (2003. 2. 17)

제39조(인력파견) 삭제 (2003. 2. 17)

##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40조(자문위원회) 삭제 (2003. 2. 17)

## 제 7 장 인사위원회

제41조(인사위원회) 삭제 (2003. 2. 17)

## 제 8 장 보 칙

제42조(비밀엄수의무) 정보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원장의 위촉이나 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해 정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한 자도 또한 같다.

제43조(정관의 변경) 정보원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22)

제44조(규정의 제정 등) ①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거쳐 정한다. 단, 민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3. 2. 17)

②정보원의 직제, 인사, 보수, 복무 및 회계규정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

2. 17)

**제45조(해산)** ①정보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보원의 해산시 채무를 변제한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유사목적 수행하는 연구기관, 단체, 기타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제46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정보원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발명권·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정보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귀속된다. 다만,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7조(공고)** 법령 또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과 정보원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홈페이지에만 게재할 수 있다.

**제48조(경영공시)** 원장은 사업계획 및 성과, 예산 및 결산, 기타 정보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그 내용이 확정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2. 17)

**제4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허가·승인 및 보고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른다.

## 부 칙(2002. 12.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정보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인가일로부터 해당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등)** ①정보원의 설립연도에 속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설립 후 2월내에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2003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당시의 임원)** ①정보원 설립당시의 임원 및 그 임기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기
이사	김영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이사	박재문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이사	김현수			설립등기일부터 3년
이사	이길형			”
이사	이원석			”
감사	안경태			설립등기일부터 2년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창립발기인 대표가 정보원을 대표하고, 원장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정보화담당관이 대행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센터 설립추진팀 및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정보원 설립 당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산하의 문화정보정보센터의 재산 일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원이 승계한다.

**제6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구분	주소	날인
김영산		
박재문		
김현수		
이길형		
이원석		
공봉석		

**부 칙(2003. 2. 17)**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 30)**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21)**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5)**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2)**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24)**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2.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이전에 행해진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

### **부 칙(2013. 7. 05)**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12. 10)**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